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324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587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324509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이점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345,08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100,000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 이율 369.8%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부터 2019. 1. 23.까지 80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60,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율 114%에서 1,404.75%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8.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5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15. 피고를 통하여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경찰관에게 ‘피고에게 갚을 남은 대부원리금 3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에는 피고가 피고를 신고한 원고에 대한 일부 채권을 포기하여 원고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점을 설시하고 있다(원고는 위 사건의 변론 종결 후에 피고가 추후 원고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형사사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추심을 한 바는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의 탄원서를 피고의 양형에 특별히 참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기하고 있기는 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를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합계 173,475,288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위 약정이자 전액을 지급한 일이 없고, 오히려 위 형사사건이 진행될 당시 대부원금이 남아 있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이 남아 있던 대부원금 채무를 피고로부터 면제받고 피고와 합의를 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서로 금전적인 배상청구 없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한 부제소합의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송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송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또한 위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대부원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2. 15. 피고를 통하여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경찰관에게 피고에게 갚을 남은 대부원리금 3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2019. 2. 15.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남은 대부원리금 채권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채권을 각 면제하거나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 합의가 부제소합의의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송으로써 소송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합의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